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57

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전재수·채현일·박해철

이학영 · 김영호 · 강득구

최민희 · 오세희 · 허 영

위성곤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보험·채권 등을 강매하였음.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·채권 등은 일제의패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.

일본 등에 대한 재산청구권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1965년 일본과 「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경제협력에 관한 협정」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는 대신 추후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음.

또한 정부가 「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」 및 「대일민간청구 권보상에관한법률」을 각각 1971년과 1974년에 제정하여 재산청구권 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한 바 있으나, 당시 전체 인구의 50%에 달하는 인원이 가입하였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나 홍보 부족 등으로 미처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음.

이에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 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국 민의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실시된 정부보상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에서 "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"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1945 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,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 여 가졌던 청구권 등을 말하며, "정부보상"이란 「대일민간청구권신 고에관한법률」 및 「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」에 따라 대한 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말함(안 제2조).
- 나.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를 둠(안 제3조).
- 다.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,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(안 제5조).

- 라.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, 해당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 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(안 제10조).
- 마.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등을 소지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강점하민간재산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함(안 제12조).
- 바.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·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할 수 있으며,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등을 할 수 있음(안 제13조).
- 사.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 간재산청구권 등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 에게 보고하여야 함(안 제14조).
- 아.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등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 증권 등을 신고를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그 유가증권 등을 양도·양수한 자,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이를 알면서 신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안 제19조).
- 자.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

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20조).

법률 제 호

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,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청구권의 정확한 실태 및 1965년에 체결된 「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」,「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」(법률 제3614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. 이하같다) 및 「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」(법률 제3615호에 따라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. 이하같다)에 따라실시된 정부보상의실태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확인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"이란 대한민국 국민(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1945년 8월 15일 이전(제1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에 일본국, 일본국 국민(법 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일제 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이자 등 과실(果實) 및 법인이보유하는 청구권 중 정부의 지분,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미 보상된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

- 1. 구 군정법령 제57호 「일본은행권,대만은행권의예입」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
- 2.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
 - 가. 일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
 - 나. 일본 저축권
 - 다. 일본국의 지방채
 - 라. 일본국이 발행한 군표
 - 마. 일본국에 본점(본사와 주사무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둔 일본국 법인이 발행한 주권, 사채 및 유가증권
- 3.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
- 4.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 되어 온 해외송금
- 5. 금융조합 발행의 예금증서 및 출자증권
- 6.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
- 7.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
- 8. 일본국 정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
 - 가. 우편저금, 진체저금(振替貯金) 및 우편위체(郵便爲替)
 - 나.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

- 9. 조선총독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
 - 가.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
 - 나. 국채 및 저축권
 - 다. 우편저금, 진체저금 및 위체저금(爲替貯金)
 - 라. 해외위체저금
 -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
- 10. 제3조에 따른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가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가 증권 및 그 밖의 증서
- ② 이 법에서 "정부보상"이란 「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」 및 「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」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말한다.
- ③ 이 법에서 "정부보상금"이란 제2항에 따른 정부보상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말한다.
- 제3조(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의 설치)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 구권실태조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4조(위원회의 업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조사
 - 2. 정부보상금의 규모에 대한 조사
 - 3. 실태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

- 4.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
 - 2. 한국은행,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의 임·직원
 - 3.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
 -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.
 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10조제2항에 따라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 -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.
- 제7조(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)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 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.
 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 - 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
 - 2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
 -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의 경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.
- 제8조(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3. 정당의 당원
 - 4. 「공직선거법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(예비후보자를 포함하다)로 등록한 사람

-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- 제9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위원회의 활동기간)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제11조(사무처의 설치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.
 -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 -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임명한다.
 - ④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, 6급 이하 공무 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 -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-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2조(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보유 신고 등)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등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밖의 증거에 미비한점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있다.
 - ③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」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로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실태조사의 실시 등)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신청인·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, 출석 요구, 증언 또는 진술 청취
 - 2. 관계인, 관계 기관·시설·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 의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
 - 3. 자료나 물건 감정 등을 위한 현장조사
 - 4.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
 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

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- ③ 위원회로부터 자료나 물건의 제출, 사실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하고, 관련 자료의 발굴, 열람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 등이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,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등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4조(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등)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활동기간 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및 정부보상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공무원 등의 파견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국가기관등"이 라 한다)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

- 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6조(비밀준수의무)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,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,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,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7조(유사명칭 사용 금지)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민간재산 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8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1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,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

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등을 신고할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반입한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·양수한 자

- 2.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을 허위로 한 자
- 2.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
- 제2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
 - 2. 제17조를 위반하여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등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.